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가합59490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심필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5. 13.

판 결 선 고 2021. 6. 3.

주 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268,425,356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28,755,2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2021. 6.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에게 1,268,425,356원, 원고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으나 이하 따로 구분하지 않고 ‘원고 B’이라 한다)에게 28,755,2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아스콘 구매계약 체결 및 아스콘 납품

1) 피고 산하 서울지방조달청 및 인천지방조달청은 2012. 6. 29.부터 2015. 6. 1.까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판매업체들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D조합인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하고,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합들’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14건의 각 아스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일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1	2012. 6. 29.	피고(서울지방조달청) - E조합	2012. 7. 1. ~ 2013. 5. 31.
2	"	피고(서울지방조달청) - F조합	"
3	"	피고(인천지방조달청) - E조합	"
4	"	피고(인천지방조달청) - F조합	"
5	2013. 7. 1.	피고(서울지방조달청) - E조합	2013. 7. 1. ~ 2014. 5. 31.
6	2013. 7. 11.	피고(인천지방조달청) - E조합	"
7	"	피고(인천지방조달청) - F조합	"
8	2013. 7. 18.	피고(인천지방조달청) - E조합	2013. 7. 18. ~ 2014. 5. 31.
9	2014. 7. 1.	피고(서울지방조달청) - F조합	2014. 7. 1. ~ 2015. 5. 31.

10	#	피고(서울지방조달청) - G조합	#
11	2014. 7. 4.	피고(인천지방조달청) - F조합	2014. 7. 4. ~ 2015. 5. 31.
12	#	피고(인천지방조달청) - G조합	#
13	2015. 6. 1.	피고(서울지방조달청) - F조합	2015. 6. 1. ~ 2016. 5. 31.
14	#	피고(서울지방조달청) - G조합	#

2) 이 사건 조합들이 서울지방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과 체결한 각 아스콘 구매계약(이하 위 각 아스콘 구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이라고 한다)은 각 수요기관¹⁾ 이 조달청에 아스콘 구매를 요청하면 조달청이 이 사건 각 구매계약에 따라 위 조합들에 납품을 요구하고, 위 조합들은 소속 조합원들에게 물량을 배정하여 소속 조합원들이 각 수요기관에 아스콘을 납품하면, 위 조합들은 각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납품한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들의 조합원으로 아스콘 제조·판매업체이다. 한편 원고들은 H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들인데,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²⁾ 도 원고들과 같은 H그룹 소속 회사들(이하 각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위 4개 회사를 통칭하여 ‘원고 A 등’이라 한다)로서, 위 조합들의 조합원인 아스콘 제조·판매업체이다.

4) 원고 A 등은 이 사건 각 구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들로부터 각 수요기관에 대한 아스콘 물량을 배정받아 아스콘을 납품하였는데, 이 사건 각 구매계약상 구매규격은 ‘순환골재 미사용’ 제품(이하 ‘일반아스콘’이라 한다)임에도 원고 A 등이 납품한 아스콘은 순환골재를 원료의 일부로 하여 생산한 재생아스콘이었다.

나. 피고의 아스콘 구매대금 차액 일부 잠정환수

1) 피고는 2017. 7. 26. 원고 A 등에게 이 사건 각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1조 제2항3) 등에 의거, 일반아스콘 대신 재생아스콘이 납품됨에 따른 아스콘 구매대금 차액 상당액[구체적으로 원고 A 3,090,619,220원, 원고 B 70,064,510원, I 1,862,583,870원, J 3,343,137,650원 합계 8,366,405,250원이다, 이하 ‘이 사건 환수통보금’이라 한다]을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2) 원고 A 등은 2017. 9. 21. 피고(조달청장)에게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부당이득액 산정과 관련하여 향후 진행될 민사재판의 판결 이후에야 비로소 정확한 환수금액이 산정될 수 있으나, 환수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A 등의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귀청이 채권보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다.

3) 이후 원고 A 등과 피고는 2017. 10. 17.경 ‘이 사건 환수통보금과 관련하여, 위 환수통보금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될 때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 A과 J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약 10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L 주식회사가 원고 A 등의 피고에 대한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하되, 피고는 환수금액 산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L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행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대출 제한 등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원고들은 2018. 4. 12.경 피고에게, 각 이 사건 환수통보금과 그에 대한 2017. 7. 26.부터 2018. 4. 12.까지의 연 3.64% 비율로 계산한 이자로서, 원고 A은 3,171,063,390원(=3,090,619,220원+80,444,170원), 원고 B은 71,888,190원(=70,064,520원+1,823,670원) 합계 3,242,951,580원을 각 납부하였고, 피고는 일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다. 관련 판결

1) H그룹의 대표이사 및 부회장으로서 H그룹의 경영을 총괄하였던 M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179호로 ‘관공서 등 발주처에서는 대부분 재생아스콘이 아닌 신골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아스콘을 발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생아스콘의 단가가 신골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아스콘의 생산단가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판매단가 역시 신골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아스콘이 높은 점을 이용하여 발주처에 재생아스콘을 마치 신골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아스콘인 것처럼 속이고 판매하여 단가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M은 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2018노907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7. 5. 제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M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환수통보금을 납부하지 않은 I과 J 등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8. 21. I과 J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구매계약상의 일반아스콘 단가와 연간 재생아스콘 평균 단가 차액을 기초로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환수통보금 청구를 인용하면서, 다만 I과 J 등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조 제4항4) 에서는 수요기관의 품질검사 및 확인의무를 정하고 있고, 제8조의25) 에서는 시정조치의무를 정하고 있음에도 각 수요기관이 납품된 아스콘의 품질검사 및 확인절차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I과 J 등도 납품한 아스콘에 대하여 품질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받거나 대체납품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는 점, 각 수요기관이 위와 같은 품질검사 및 확인절차를 제대로 취하였다면 재생아스콘 납품을 시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손해의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면, I과 J 등(위 사건의 피고들)이 피고(위 사건의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환수금은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환수통보금 청구 중 60% 상당액만을 인용하였고(위 법원 2018가합535981 판결,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피고와 I, J 등이 이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 5. 13. 그 각 항소들을 모두 기각하였으며(위 법원 2019나2043017 판결), 위 선행판결은 2020. 6.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1 내지 16,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환수통보금⁶⁾ 중 이 사건 선행판결로써 정해진 피고의 책임비율(40%) 상당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정당히 그 이득을 보유할 법률상원인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위 선행판결에서 정해진 피고의 책임비율은 이 사건의 경우에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부당이득금

1,268,425,356원(= 3,171,063,390원×40%), 원고 B에게 부당이득금

28,755,276원(= 71,888,190원×40%)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행청구 의사가 나타난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1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기산일을 대금지급일(2018. 4. 12.)로 하는 원고의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7)]].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선행판결은 타당하지 않고, 원고들의 변제가 완료되어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들의 변제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이고, 원고들의 반환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법원의 판결'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환수금액을 정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A 등 중 원고들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2018. 4. 12. 피고에게 '잠정적으로' 이 사건 환수통보금을 일단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선행판결은 위 합의의 일부 당사자인 피고와 I, J을 그 당사자로 하고 있고, 그 사실관계가 이 사건과 사실상 동일하며,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점, ③ 환수통보금을 일단 지급한 원고들과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선행판결에 이르게 된 I, J을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하여도 위 선행판결의 취지대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기환, 판사 이용희, 판사 배다현

1) 조달청에 계약물품을 조달 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한 기관을 말한다.

2) 이후 상호가 ‘K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구분하지 않고 ‘J’이라고만 한다.

3) 특수조건 제11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4) 특수조건 제5조(납품)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골재 등 품질확인, 실내현장배합설계 및 시험생산 등 품질시험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의 확인 또는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5) 특수조건 제8조의2(검사불합격에 대한 처리) ① 수요기관으로부터 불합격 통보시 정상제품으로 대체납품은 물론 다음과 같이 물량배정을 중지한다.

6) 그 성질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 할 수 있고,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의 대상이 된다.

7)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고 보기도 어렵다.